

제2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82
- 나. 발 의 자: 이종숙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9월 26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2. 제안이유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출산 전·후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지원대상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모자보건법」 제3조
- 2)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 제8조
-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나. 예산조치: 예산편성 필요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0. 6. ~ 10. 1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저하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신부¹⁾의 가사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임신부'와 '임산부'의 구분

- 임신부(임부):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성
- 임산부: 아이를 임신한 여성(임부)를 아이를 갖 낳은 여성(산부)를 아울러 부르는 말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관내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고려²⁾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시함

※ 지원대상: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신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제공 서비스 및 지원내용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 지원내용

-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서비스를 1일 4시간이내, 최대 12회까지 서비스를 지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서비스 횟수를 연장가능)
- ② 구청장은 중복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임신부에게는 횟수 등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여 제공가능

2) 강서구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구 분	주민등록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
전 국	51,829,136	2,146,748	372,884	- 결혼이민자: 173,756 - 귀 화 자: 199,128	266,321
서울시	9,586,195	443,262	75,430	- 결혼이민자: 31,661 - 귀 화 자: 43,769	36,336
강서구	564,854	13,018	3,916	- 결혼이민자: 1,720 - 귀 화 자: 2,196	2,041

[출처: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2020. 11. 1. 인구주택총조사]

- ▶ 다문화가족 수: 구로(9,636), 영등포(8,293), 금천(5,806), 관악(4,994), **강서(3,916/5번째)**
- ▶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외국계 자녀 등
-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귀화자(국적취득)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업무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한다.
→ 사회적 기업 등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명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동시에 추구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안 제8조에서는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가사 돌봄 및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더불어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³⁾ 및 모성사망비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 우리 구의 출생등록 현황도 2013년 5,298명에서 2021년에는 3,011명으로 **급감**이 확인됨

※ 강서구 출생등록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 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19년	2021년
인 원	5,298	5,818	4,812	3,905	3,905	3,011

- 이에 우리 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참고1: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정책 현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3)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 18년간 4.7배 증가 (2000년 4만3000명 → 2018년 10만 4000명)

4) 모성사망자(출생아 10만명 당 사망하는 산모 수) 수 및 모성사망비

[출처: 통계청]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임신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라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4조(제공서비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1. 청소, 세탁 및 정리 등 가사기본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유사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⁵⁾

5) 정부지원(보건복지부)·서울시 유사사업 비교

구 분	정부지원(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시기	2022년 시범사업	2023년 시행예정
지원대상	서울 거주 <u>중위소득 150% 이하</u> 임신부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 <u>중위소득 150%이하</u>
지원규모	시범자치구 - 마포구, 관악구 (총 100가구)	강서구 배정인원 총 800명- 임산부 320명 (서울시 총 5,000가구)
지원횟수	총 8회	총 6회
예산규모	43백만원 (국비:시비 50:50)	6,460백만원 - 강서구 예산 336백만원 (시비:구비 50:5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⁶⁾ 및 중복지원 대상자 발생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2: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유사 서비스 세부사항]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 근 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내 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 목 적: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복지급여의 중복, 편중 등을 방지

참고1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정책 현황

사업명	내용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2022. 1. 1.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원상당의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	2022년 신규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2022. 1. 1.이후 출생한 만 0~2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월 10~2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 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강서구 거주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간 연간 최대 30만원의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상당의 바우처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 지원
적극적 출산지원 및 난임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 총 21회 지원 - 건강보험 신선배아 9회 소진 후 10회차 180만원 지원(서울형난임)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지원(한의약 난임)
신 전(前) 건강관리 및 남·여 임신준비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소기능 검사(AMH), 정액검사(정자 수, 활동성, 기형률) 등 건강검진 지원 - 임신 전(前) 엽산제 복용 지원으로 기형아 출생 예방(남·여 각 3개월분)
임신 중(中)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등록 통한 주수별 임산부 엽산·철분제 지급 및 산전검사 통한 건강관리 - 고위험 임산부 지원(30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120만원)
출산 후(後)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일부 지원(산모 및 신생아 돌봄) - (다둥이맘) 산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만원 한도) - 영유아 건강간호사에 의한 출산가정 방문 서비스(임산부 영유아) 제공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원·수술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7만원이내) 및 환아관리(의료비 및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7만원이내) 및 보청기 지원(3세 미만, 양측, 개당 131만원이내)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월 70천원), 조제분유 지원(월 90천원) -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40만원 이내) -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12개월, 월 20만원의 바우처 지급)

참고2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유사 서비스 세부사항

● 정부지원(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022년 시범사업)

시행기관	마포구, 관악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1순위: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 고위험 임산부 - 3순위: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4순위: 맞벌이 가구 		
지원규모	총 100가구 ※ 2022. 6월부터 실시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환 - 서비스 제공: 바우처사업 제공업체로 등록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관악구), 나누리(마포구)		
지원횟수	총 8회(2개월)		
본인부담금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수급자, 차상위)	432,000원	48,000원(10%)
	2등급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84,000원	96,000원(20%)
예산('22년)	43백만원(국비:시비 50:50) (1명당 단가 60천원)		

● 자치구 자체 사업

시행기관	중 구	성 동 구	광 진 구
지원대상	임산부 ※ '19년 고위험임산부 → 일반 임산부	임산부 ※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
지원규모	70명	600명	600명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접수 - 서비스 제공 : 협약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서비스 제공 : 용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한돌봄(성동지부, 남부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지원횟수	총 5회(2개월)	총 6회	총 4회(2개월)
예산('22년)	28백만원 (1명당 단가 약 68천원)	237백만원 (1명당 단가 약 56천원)	144백만원 (1명당 단가 약 58천원)

● 서울시 2023년 시행 예정 사업

시행기관	서울시
지원대상	<p>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중,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p> <p>①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고위험임신질환 19종: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증, 전치태반,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p> <p>② 임신 아동 외 12세이하 자녀(초6 이하) 양육 임산부</p>
지원규모	<p>서울시 5,000가구 지원(강서구 배정인원 총800명: 임산부320명, 다자녀180명, 맞벌이300명)</p> <p>임산부(임신~출산후 1년 이내) 86,820명 × 중위 150% 이하(70%) × (가사돌봄 공백 10% + 자녀 12세 이하 27%) × 20% ≒ 5,000가구</p>
운영방법	서울시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전자바우처 운영
지원횟수	총 6회(1회 4시간)
예산(2023년)	6,460백만원(강서구 예산 336백만원) / 시비:구비 50:50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